

# 양산 평산 2차 코아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550번지 일대
- 건축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3~30층 7개동 총 405세대

#### ■ 공급 개요

공급 유형	주택형	공급 세대수	세대당 주택면적(㎡)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일반 분양	70	64	70.4742	20.9956	91.4698	'21.01 (예정)
	84A	225	84.8608	24.2294	109.0902	
	84B	116	84.8008	24.2174	109.0182	
소계		405				

※ 기관별 특별공급 배정물량 : 붙임2, 특별공급대상자 배정내역

#### ■ 예상 분양가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최종 확정

#### ■ 분양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예정)	'18.06.07	• 양산 평산 코아루 홈페이지(www.양산평산코아루2차.com)
특별공급 청약접수	'18.06.12 (10:00~17:30)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인터넷 신청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18.06.21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양산 평산 코아루 홈페이지(www.양산평산코아루2차.com)
계약체결	'18.07.03 ~ 07.05	• 양산 평산 2차 코아루 견본주택
입주	'21.01(예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신청 / 중복 당첨시 당첨은 무효처리 됨)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양산 평산 코아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Ⅱ. 특별공급자격

###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7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필요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 자격관련 유의사항

- 가.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을 취소함.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급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 불가함(계약체결 불가).
- 다.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라.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Ⅲ. 신청방법 및 신청시 구비서류

#### ■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가.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원칙으로 함(서류제출 없음)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접수 가능(서류제출 필요)

나. 접수시간 08: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다.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7.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방문 신청시(각1통)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신청서	· 당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견본주택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단, 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④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제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용도 : 기타특별공급 신청용
⑤ 신분증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지참]
⑥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신청일에 견본주택 비치

####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추가 제출)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 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구비서류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일에 견본주택 비치)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 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②는 불필요 → <b>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b> )
③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IV.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잔여 세대는 타 유형이 특공낙첨자(기관 예비자 포함)에게 공급 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청약, 공급 유형별로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계약체결 불가, 특별공급자격 상실,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분양가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양산 평산 2차 코아루’ 홈페이지(www.양산평산코아루2차.com)** 게시 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 배정은 관계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의 특별공급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양산 평산 2차 코아루’ 분양사무소(055-363-3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위치도 등

## ■ 위치도





■ 조감도



※ 상기 조감도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행 : 한국토지신탁 / 시공 : (주)구국토건 / 위탁 : (주)이안디벨로프